



북한 법 동향:《국가비밀보호법》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북한은 북한의 국가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리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제1조)을 목적으로 2023년 2월 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제1215호로 《국가비밀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COVID-19을 겪던 당시, 2020년에 《반동문화사상배격법》¹⁾,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²⁾,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³⁾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이 법들은외부 정보가 북한 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가비밀보호법》 역시 정보를 통제하여 북한 내부의 실상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비밀’이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일상적인 사정까지도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진다. 이 법에 따른 북한의 국가비밀 범주에는 북한의 외교·군사 기밀 사항뿐만 아니라 인민반 포치 사항, 장마당의 물가, 역전 주변을 촬영한 사진 등 일상적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전해진다.⁴⁾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국가비밀’ 보호를 다루는 북한 보위부 간부와 가족들이 법 위반을 이유로 적발되어 경고, 엄중 경고, 조동⁵⁾, 해임, 강직 등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30여건에 이른다고 전해졌다.⁶⁾

북한의 《국가비밀보호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항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1) 2020년 12월 4일 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5호.
2) 2021년 9월 29일 채택.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1호.
3) 2023년 1월 18일 채택. 14기 8차 최고인민회의.
4) KBS 뉴스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채택…“정보 유출 말라”, 2023.02.1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02884>.
5) 調動
6) 정태주 기자, “‘국가비밀보호법’ 시행 1년 총화 ... ‘보위부가 위반’ 황북서만 100건”, 2023.12.19. <http://www.dailyNK.com/20231219-4/>

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기밀 등에 관한 내용을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비밀보호규칙」,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등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북한의 《국가비밀보호법》 주요 조항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국가기밀 관련 법령의 조문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조문 체계	
제1장 국가비밀보호법의 기본	
제1조 (법의 사명)	
제2조 (국가비밀의 정의)	
제3조 (국가비밀대상)	
제4조 (국가비밀의 범위와 등급제정원칙)	
제5조 (국가비밀보호관리체계의 수립원칙)	
제6조 (국가비밀보호의 자각적준수원칙)	
제7조 (해당 법규의 적용)	
제2장 국가비밀의 내용과 등급	
제8조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	
제9조 (국가비밀의 등급)	
제10조 (극비)	
제11조 (절대비밀)	
제12조 (비밀)	
제13조 (국가비밀의 표시)	
제14조 (국가비밀의 등급과 리용자, 보호기간의 선정)	
제15조 (국가비밀등급의 확정)	
제16조 (국가비밀의 리용자확정)	
제17조 (국가비밀의 보호기간지정)	
제18조 (국가비밀의 리용자, 보호기간의 변경)	
제3장 국가비밀대상의 보호관리	
제19조 (국가비밀대상의 등록)	
제20조 (국가비밀대상의 취급에서 금지사항)	
제21조 (비밀관리부서와 비밀관리성원)	
제22조 (국가비밀대상의 보관설비 및 보관장소)	
제23조 (국가비밀보호구역에 대한 보호대책)	
제24조 (설비, 제품, 재료에 대한 비밀보호대책)	
제25조 (국가비밀취급정보체계의 운영 및 리용)	
제26조 (국가비밀취급정보체계의 자료취급에서 비밀보호)	
제27조 (국가비밀취급용컴퓨터, 기억매체의 운영 및 리용에서 금지사항)	
제28조 (회의 또는 모임에서 국가비밀보장)	



제29조 (국가비밀에 속하는 제품, 발명품, 논문의 출품금지)
제30조 (국가비밀문건의 정리 및 제본)
제31조 (국가비밀문건의 실사)
제32조 (조동, 해임, 년로 및 사회보장성원의 비밀문건처리)
제33조 (국가비밀보호대상의 넘겨주기와 넘겨받기)
제34조 (중요국가비밀문건의 열람)
제35조 (국가비밀대상의 휴대)
제36조 (문학예술작품 및 출판보도물에서 국가비밀보호)
제37조 (국가망 및 정보기술봉사에서의 국가비밀보호)
제38조 (사업과정에 국가비밀보호)
제39조 (대외사업에서 국가비밀보호)
제40조 (국가비밀루설에 대한 신고)
제4장 국가비밀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 (국가비밀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제42조 (국가비밀보호사업의 조직)
제43조 (국가비밀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44조 (비밀루설요소의 대책)
제45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제46조 (형사적책임)
제45조 (몰수처벌)
제46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제47조 (형사적 책임)

1. 주요 내용 비교 분석

1. ‘국가비밀’의 정의

북한의 《국가비밀보호법》 제2조는 ‘국가비밀이란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관계되는것으로서 정해진 기간안에 일정한 범위의 사람만이 알게 되어있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북한의 국가비밀에 해당하는 ‘국가기밀’ 혹은 ‘비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상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 법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상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 직무로서 국가기밀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보안업무규정」은 「국

가정보원법」 국가기밀 중에서도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법」 상 ‘국가기밀’과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은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고, 북한 《국가비밀보호법》에서는 ‘국가비밀’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6. 1. 2.] [법을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2023년 2월 2일 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15호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국가 기밀(국가 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 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제2조 (국가비밀의 정의) <u>국가비밀이란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관계되는것으로서 정해진 기간안에 일정한 범위의 사람만이 알게 되어있는 내용을 말한다.</u> 제14조 (국가비밀의 등급과 리용자, 보호기간의 선정) 국가비밀의 등급, 리용자, 보호기간의 선정은 해당 대상을 국가비밀로 정한 단위가 한다. 국가비밀로 정한 단위는 국가비밀의 등급, 리용자, 보호기간을 국가의 안전과 리익의 견지에서 정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 12. 13.] [법을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국가비밀의 범위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제8조는 국가비밀에는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관계되는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속한다고 정하면서 구체적인 국가비밀의 유형 12개를 열거하고 있다. 1. 우리의(북한의) 국가 최고지도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내용, 2. 당 및 국가정책집행과 관련한 내용, 3. 무력, 군수부문과 관련



한 내용, 4. 국가보위부문과 관련한 내용, 5. 조국통일, 국가외교와 관련한 내용, 6. 과학기술과 관련한 내용, 7. 비밀보호를 위한 암호와 관련한 내용, 8. 통계자료, 9.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내용, 10. 대외경제와 관련한 내용, 11. 형사사건과 관련한 내용, 12.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국가비밀로 정하는 내용이 북한의 국가비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 북한의 국가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나누어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제8조제3호에서 ‘무력·군수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가비밀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사기밀 및 그 취급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다.

북한《국가비밀보호법》 제8조제5호에서‘조국통일·국가외교와 관련한 내용’을 국가비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정하고 있다.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외교부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고, 외교부예규 「외교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에서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외교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제8조제8호에서 ‘통계자료’를 북한의 국가비밀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는 기본적으로 공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 제27조제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제8조제11호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북한의 국가비밀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3조)고 정하고 있고, 법 제9조에서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공개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법부가 취급하는 국가 기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규칙인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과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상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조)을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조)로 제정되었다. 대법원 규칙인 「비밀보호규칙」에서 정하는 ‘비밀’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상의 정의와 같으며, 비밀보호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비밀관리규칙」 제2조제1항)된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2023년 2월 2일 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1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u>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u>	제8조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 국가비밀에는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관계되는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속한다. 1. 우리의 국가최고지도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내용 2. 당 및 국가정책집행과 관련한 내용 3. 무력, 군수부문과 관련한 내용 4. 국가보위부문과 관련한 내용 5. 조국통일, 국가외교와 관련한 내용 6. 과학기술과 관련한 내용 7. 비밀보호를 위한 암호와 관련한 내용 8. 통계자료 9.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내용 10. 대외경제와 관련한 내용 11. 형사사건과 관련한 내용 12.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국가비밀로 정하는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
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
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하 생략)

「통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
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
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
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국가비밀 등급 체계 및 보호기간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제9조는 국가비밀의 등급을 중요성에 따라 극비, 절대비밀, 비밀, 세 가지로 구
분한다. 극비는 누설되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극히 엄중한 위험이 조성될 수 있는 제일 높은 급의 국가
비밀이다. 극비에는 우리의 국가최고지도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자료와 무력, 군수, 조국 통일, 외교, 중
요정책집행, 중요과학기술, 변신암호, 국가적 통계를 비롯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략실현에서 최고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극히 중요한 자료가 속한다(북한《국가비밀보호법》 제10조).

절대비밀은 국가의 안전, 이익과 관련되는 높은 급의 국가비밀이다. 절대비밀에는 극비에 속하지는 않

지만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략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서 허용된 범위 밖으로 알려지지 말아
야 할 자료가 속한다(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제11조).

마지막으로 비밀은 국가의 안전, 리익과 관련되는 낮은 급의 국가비밀이다. 비밀에는 극비, 절대비밀에
속하지는 않지만 허용된 범위밖으로 알려지지 말아야 할 자료가 속한다(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제11조).

그리고 북한의 국가비밀은 등급에 따라 극비는 50년, 절대비밀은 30년, 비밀은 10년으로 보호기간을
정한다. 국가비밀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밀해제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북한 《국가비밀
보호법》 제17조).

우리나라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서 비밀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I 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
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영 제4조제1호), II 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영 제4조제2호), III 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
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영 제4조제3호)이다. 각급비밀에 어떠한 사항이 해당되는지
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영 제12조제1항에서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
류해서는 아니 되고(같은 조 제1항),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 제13조에서 비밀을 취
급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
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영 제12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에 따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
는 그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2023년 2월 2일 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15호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I 급비밀: 누설될 경우 <u>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 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u>	제9조 (국가비밀의 등급) 국가비밀은 <u>중요성에 따라 극비, 절대비밀, 비밀</u> 로 구분한다. 제10조 (극비) 극비는 누설되면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극히 엄중한 위험이 <u>조성될수 있는 제일 높은 급의 국가비밀</u> 이다.



-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제12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13조(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예고문) 제12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극비에는 우리의 국가최고지도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자료와 무력, 군수, 조국 통일, 외교, 중요정책집행, 중요과학기술, 변신암호, 국가적통계를 비롯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략실현에서 최고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극히 중요한 자료가 속한다.

제11조 (절대비밀)
절대비밀은 국가의 안전, 리익과 관련되는 높은 급의 국가비밀이다.
절대비밀에는 극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략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서 허용된 범위밖으로 알려지지 말아야 할 자료가 속한다.

제12조 (비밀)
비밀은 국가의 안전, 리익과 관련되는 낮은 급의 국가비밀이다.
비밀에는 극비, 절대비밀에 속하지는 않지만 허용된 범위밖으로 알려지지 말아야 할 자료가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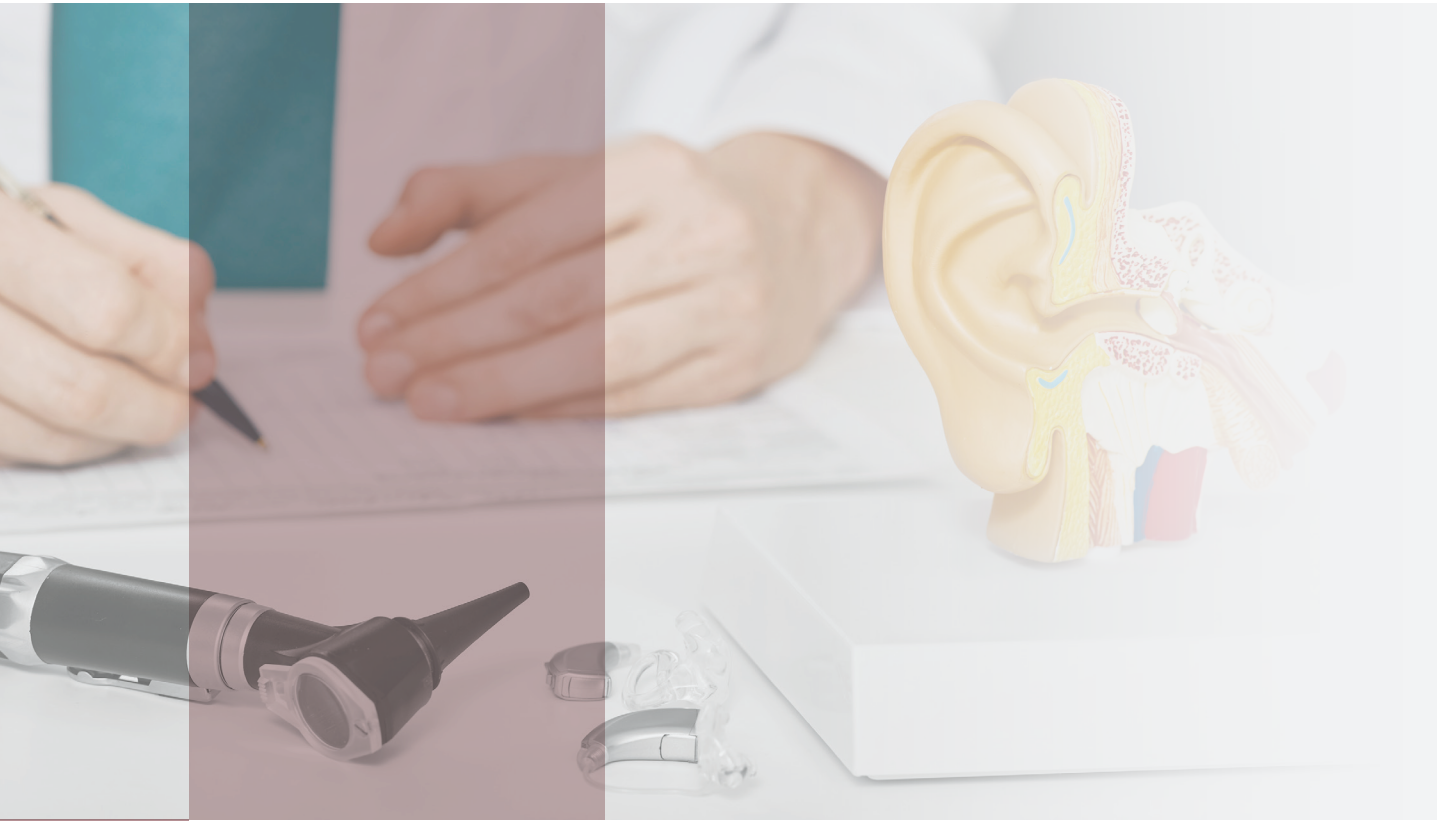
제17조 (국가비밀의 보호기간지정)
국가비밀은 등급에 따라 극비는 50년, 절대비밀은 30년, 비밀은 10년으로 보호기간을 정한다.
국가비밀보호기간을 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비밀해제조건으로 지정할수 있다.

2. 나가며

이 글은 2023년 제정된 북한의 《국가비밀보호법》상 국가비밀의 정의 및 범위, 등급에 관한 조문을 우리나라 국가기밀 및 주요 정보 관련한 법령의 조문과 비교 검토해보았다. ‘국가 기밀’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남북한 법제를 비교하면서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대한 이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법체계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안전 보장과 행정 정보의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다양한 법익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 법제 간 차이를 인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	사 건 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9549
	재결일자	2025-11-18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5. 6. 18.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A보훈병원은 2024. 12. 23.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이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 2항 2105호로 판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5.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7급 2106호로 결정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조교 및 내부반장직을 수행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귀마개나 기타 안전장치 없이 교육생의 사격 등을 지도하였는데, 계속되는 사격, 수류탄, M60 사격교육으로 인하여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청각 장애를 얻었다. 청구인은 난청증상으로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신장 질환 등 다른 질병과 생활고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청 증상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동일한 7급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계 법령상 귀의 장애측정방법에서 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24. 11. 8. A보훈병원에서 검사한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최소가청력치 ‘우측 55dB, 좌측 47.5dB’로 확인되어 2025년 제141차 상이등급 보훈심사회의에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으로 인정되어 7급 2106호로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보훈병원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1. 18.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 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A보훈병원은 2024. 12. 23.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6급 2항 2105호로 판정하였다.

- 다 음 -

- 1) 상이처: 이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 2)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2105호
- 3) 상이정도: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 이비인후과 소견: 청각 장애 5급(2019년 보훈병원)
 - ABR RT 60, LT 70db파 관찰
 - PTA RT 56, 66, 66 LT 65, 66, 64
 - 이명도 검사상 양측 8khz 80~100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5.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7급 2106호로 심의·의결하였으 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6.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이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2106호에 해 당 의결함.

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보훈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dB)

검사일시	AC	500Hz	1KHz	2KHz	4KHz	6분법
2024. 11. 8. 14:20	Rt	55	65	70	75	66.6
	Lt	50	70	65	70	65
2024. 11. 8. 14:30 HA(Hearing Aid)	Rt	55	55	50	65	55
	Lt	50	50	40	55	47.5
2024. 12. 23.	Rt	50	65	70	75	65.8
	Lt	50	65	65	70	63.3

2)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우측 70dB, 좌측 60dB 에서 V파형 보임

검사일시	Rt/Lt	Stim Level	V Latency
2024. 11. 8. 14:20	Rt	70dBnHL	7.27ms
	Lt	60dBnHL	8.77ms

3) 이명도검사 결과: 우측 귀 이명 관찰됨

- 가) 2024. 12. 23., 2025. 1. 7.자: 양측 이명 있음
- 나) 2025. 1. 10.자: 한쪽 이명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 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여야 하는데,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에서 공상군경 요건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 정한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

가 있는 사람’은 ‘6급 1항 2104호’,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2105호’,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2106호’에 해당한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6급 1항 2104호’의 장애내용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고, ‘6급2항 2105호’의 장애내용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며, ‘7급 2106호’의 장애내용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다. 또한,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us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두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6, 한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7)으로 인정하는데, 귀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한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주파수 별로 단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검사대상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 으로 판정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최소 가청력치 기준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상 귀의 장애측정방법에서 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는 규정 외에 별다른 기준이 없는 이상 보조장치 없이 한 청력검사결과로 장애정도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보훈병원은 2024. 12. 23.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과목 전문의는 ‘청각 장애 5급(2019년 보훈병원), ABR RT 60, LT 70db과 관찰, PTA RT 56, 66, 66, LT 65, 66, 64, 이명도 검사상 양측 8khz 80~100’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6급2항 2105호로 판정한 점, A보훈병원에서 2024. 11. 8. 14:30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측정하였으므로 ‘우측 55dB, 좌측 47.5dB’의 기록을 청구인의 청력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2024. 11. 8. 14:20, 2024. 12. 23.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66.6dB, 65.8dB, 좌측 65dB, 63.3dB’로 측정되어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청기를 착용한 채 청력검사를 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이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24. 11. 8. 14:30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7급 2106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